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2, 75-95, 2026.10.
http://dx.doi.org/10.23089/jdca.2026.9.2.004
pISSN 2635-6856 eISSN 2734-0392

전라도 남원현의 製紙와 사찰의 紙役

Paper production and temple paper-making labor in Namwon-hyeon, Jeolla-do

김병남(Byungnam Kim)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Kbnam@jbnu.ac.kr

목 차

1. 머리말
2. 전라도의 製紙와 남원 종이
3. 조선시대 사찰의 僧役과 紙役
4. 남원현 사찰의 상황과 종이 공납
5. 맺음말

초 록

18세기 초반 전라도 남원의 지역사를 들여다볼 관청 문서가 존재한다. 그것은 『남원현첩보이문성책』(영조11~12년)과 『남원현공사』(영조11~13년)로 지방 관청의 연간 업무 내용을 담았다. 즉, 남원과 상급 관아 및 중앙 부서 사이의 문서, 또 남원 관할 아래의 하급 기관과 오간 내용을 적어 당시 지역 사회상을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다.

그중에 주목되는 것이 종이 공납과 남원 지역 사찰의 紙役에 관한 것이다. 일찍이 남원은 조선시대 내내 최고의 한지 생산지로서 종이 공납이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꼽혔다. 따라서 종이 생산과 납부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원의 製紙 상황과 함께 생산 부담 계층의 실제적인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익히 알다시피 종이 공납은 조선 초기부터 僧役의 일종이었고, 후기에도 사찰의 종이 공납이 지속되었다. 중앙 관서인 造紙署의 미비는 종이 생산을 오롯이 지방 군현에 전가시켰고, 대동법 실시는 현물 납부의 불필요성으로 지방 紙所의 기능도 마비시켰다. 그런데도 대내·외적으로 종이 소비량은 증대하면서 지방의 종이 공납이 독촉되었고, 사찰이 1차 종이 생산처로서 고착화되면서 사원마저 쇠락하게 만들었다.

문서에 따르면 18세기 남원도 역시 종이 생산과 공납의 대부분이 승역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남원은 천언사, 보현사, 귀정사, 난계사, 풍곡사 등의 사찰이 紙役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上納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가 이하로 대금을 결제 받았다. 결국 이러한 부당 처우가 지속되면서 사찰의 紙役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사찰에서 중들이 도망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키워드 : 남원, 製紙, 僧役, 紙役, 지역사

ABSTRACT

There are government documents that provide insight into the local history of Namwon, Jeolla-do in the early 18th century. 『Namwonhyeoncheopboimunseongchaek』(11th~12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Namwonhyeongongsa』(11th~13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contain the annual work of local government offices. It is possible to read in detail the local society at the time through documents exchanged between Namwon and higher-level government office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es, as well as content exchanged between lower-level organizations within Namwon. Among them, there is much information about the Paper tribute in Namwon and the paper-making labor of temples. This is because Namwon was the best Hanji production area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nd Paper tribute was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tasks. Therefore, by looking at the records of paper production and payment, we can understand the actual reality of the burden class along with the paper-making situation in Namwon.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aper tribute was a type of labor that the monks of temples were responsible for, and the paper payment of temples continued ev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ack of a Central Paper Production Office left paper production entirely to local coun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 Law paralyzed the function of local paper offices by making payment in kind unnecessary. However, as paper consumption increa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Local Paper tribute continued to be demanded, and as temples became established as the primary producers of paper, even temples began to decline. According to the documents, in the Namwon area in the 18th century, most of the paper production and payment was also resolved through labor by the monks. At that time, temples in Namwon such as Cheonwonsa, Bohyeonsa, Gwijeongsa, Nanggyesa, and Punggoksa were in charge of paper-making labor. However, they were not properly paid for the paper they produced or were paid below cost. As these unfair practices by government continued, the paper-making labor of the temple became unbearable. It can be confirmed that this was an important factor in causing the monks to flee from the temple.

※ Keywords : Namwon, Paper making, monk's labor, paper-making labor, Local history

• 논문접수 : 2026.09.09. • 최초심사 : 2026.09.17. • 심사완료 : 2026.09.22.

1. 머리말

조선 후기인 18세기 초반 전라도 남원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결국 기록의 유무에 달려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남원 지역사와 관련해서는 영조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관청 문서인 『南原縣牒報移文成冊』(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과 『南原縣公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가 남아 있다.

2책으로 구성된 『남원현첩보이문성책』은 영조 11년(1735) 10월~12월과 영조 12년(1736) 11월~13년(1737) 2월까지 남원현에서 상급 기관인 敬差官 · 巡營 · 兵營 · 中營 · 左營 · 戶曹 및 하급 기관인 관내의 면[坊] 등과 각종 업무 관련으로 주고받은 문서가 정리되어 있다. 또 4책으로 구성된 『남원현공사』도 영조 11년(1735) 12월~13년(1737) 9월까지의 각종 관서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들은 조선 후기 지방 관청의 연간 업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상급 및 동급 그리고 하급 기관 사이에 오고 간 다양한 공문서가 남아 지방 군현과 관련 기관의 업무 협조 상황이나 보고 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소송 문서와 형사 사건 처리 등도 당시 지역 사회상을 읽어내는데 주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문서 내용 중 본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종이 공납과 사찰 紙役에 관한 것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한지의 우수성에 주목하여 최고의 한지 생산지로서 전주와 함께 남원을 꼽는다. 따라서 관련 연구는 우수한 한지나 인쇄술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1] 하지만 최고를 지향하는 한지의 우수성은 결과론적인 접근이기에 실제 지역생활사의 전개에서 종이의 생산과 납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초~중반 남원현의 종이 생산과 그에 따른 부담 등이 실제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당대의 생활사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종이 생산과 공납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제지의 종류와 상황, 그리고 부담 계층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글에서는 조선시대 남원 종이의 전통성, 사찰 승역의 하나로서 紙役의 전개와 의미, 그리고 남원현과 남원 관내 사찰의 종이 공납 현실 등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18세기 남원현의 일상 속에서 종이 공납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었는지와 함께 남원 지역민의 생활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2. 전라도의 製紙와 남원 종이

조선시대의 전라도 종이의 우수성과 남원의 종이 생산 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전 철, 「한지의 이해와 전북의 한지」, 『전북의 예술사』, 서경문화사, 2000.
이동희, 「전주한지의 역사성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전북사학』 45, 2014.
강혜영,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조선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2, 2005.

종이[表箋 · 奏本 · 副本 · 咨文 · 書契 등의 종이 및 表紙 · 擣鍊紙 · 白奏紙 · 油芚 · 歲畫 · 眼紙인데, 도내에서는 오직 이 고을과 남원의 품질이 좋다.](『세종실록』 151, 「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土貢)

表箋紙(『세종실록』 151, 「지리지」, 전라도 남원도호부 土貢)

조선 초기 전라도에서는 20가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종이[各色紙]'들이 생산되었다.[2] 이 당시 전국에는 108개소의 닥나무 산지와 89개소의 종이 생산지가 있었다. 이처럼 생산지가 많았던 것은 세종 연간 대규모의 서적 인쇄와 외교 進獻用 종이 공급과 관련이 있다.[3] 그중 최상품 종이만을 사용하는 표전지를 전주부에서 공납한다는 점, 품질이 우수한 종이는 전라도 안에서도 오직 전주와 남원뿐이라는 점을 덧붙였고, 여기에 남원부는 다른 군현과 달리 표전지라는 특정 종류의 종이를 생산한다는 사실도 특기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중종(1506-1544)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전주 종이를 '上品'이라고 적었다.[4] 이후 기록에도 전라도 종이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남원과 전주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尹粹가 "紙造所를 신설할 때 모두 '종이의 품질이 반드시 남원이나 전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지조소 종이의 품질이 매우 좋아 도리어 남원 · 전주의 종이를 쓰지 않습니다.……"고 아뢰었다.(『세종실록』 49, 세종 12년 9월 11일)

처음에는 事大의 表 · 箋 · 奏 · 啓 · 咨文에 쓸 종이를 전라도 전주와 남원부에서 歲貢하였는데 많이 쓰는 것을 대지 못하였다. 금상 2년에 특명으로 조지소를 두어 종이를 만들었는데 품질이 옛 것에 견주어 훨씬 곱고 좋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주와 남원 2부의 공역 독촉 폐단이 비로소 제거됐다.(『세종실록』 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조지소)

『세종실록 지리지』에 언급되었듯이 국가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종이를 남원과 전주에서 제작하여 공물로 받았는데, 사용처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였기에 세종 2년(1420)에 이르러 중앙에 조지소를 설치하고 종이를 생산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국제 질서의 중심인 명나라와의 외교 문서 작성에 최고 양질의 종이를 썼던 것을 감안하면, 조선 초기 남원과 전주에서 외교용 고급 종이를 전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지서의 설치로 종이 공역 독촉의 폐단이 사라졌다고 하였지만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外方의 진상 冊紙는 都會所를 설치하여 만드는데 그 닥나무와 軍人을 각 고을에 分定하여 도회소에 모아 여러 달 立役시키니 부자 형제가 糧食을 가지고 대신[代立]하므로 왕래하는데 매우 곤란합니다.……지금부터 다만 入番한 人吏 · 日守 · 官奴婢와 자원 僧徒로만 (하여) 폐단이 없도록 절반으로 줄여서 만든다면 두루 이로울 것 같습니다.(『문종실록』 4,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전라도 관찰사가 "咨文紙 · 奏聞紙 및 各司에 납부하는 表紙 · 擣鍊紙는 모두 남원 · 전주 등의 고을에 分定하여 收納하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백성이 받는 폐해가 작지 않으니, 청컨대 그

2) 『세종실록』 151, 「지리지」, 전라도 厥貢.
3) 전영준, 「조선전기 관찬지리지로 본 楮 · 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11, 66쪽.
4) 『신증동국여지승람』 33, 전주부 土産. "紙[品上]"

수량을 줄여 주십시오"라 아뢰었다.(『문종실록』 7, 문종 원년 5월 3일)

조지서가 공식으로 세워진 1420년으로부터 30년 후인 문종 원년(1451)에도 남원 · 전주 등의 고을은 여전히 과도한 종이 공납이 배당되었다. 그런데 紙匠들과는 별도로 지역 농민들도 종이 공납을 위해 동원되었다. 문종 즉위년(1450)에 의하면, 종이 제작을 위해 도회소에 동원된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작업에 종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도회소는 도회로 지정된 특정 邑의 처소를 의미하므로[5], 도내 각 군현의 紙料와 제작 동원인들이 반드시 모여 일을 수행하는 번거로움에 처했다. 따라서 이 폐단을 없앨 방안 중 하나로 僧徒의 入番이 거론되고 있다.[6]

이처럼 남원 · 전주 등의 종이 공납 체제 유지는 여전한 수요와 공급 원칙에 연결된다. 조지소의 설치로 외교용 종이의 자체 조달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중앙 관서에서 필요한 종이량은 감당할 수 없기에 각 고을에서 생산하는 공물에 의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기로 이어져도 마찬가지이다.

> 造紙署는 본래 事大하는 문서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근래에는 만든 종이가 매번 거칠고 나빠서 쓸 수가 없습니다.(『중종실록』 54, 중종 20년 5월 15일)

중종 때 조지서의 종이 품질이 '거칠고 나쁘다(麤惡)'고 나온다. 이는 조지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음을 뜻한다. 그런데 중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주 종이가 '上品'으로 부기되었다. 따라서 이 두 기록을 연결시키면 성종과 중종 때까지 남원 · 전주 등 전라도가 종이 공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조선 중기 사회에서 종이는 생활필수품이었다. 李文楗의 『묵재일기』에는 명종(1545~1567) 때 경북 성주에서 닥나무 11근 정도가 무명 1필에 거래되었다고 나온다.[7] 당시 5승포 1필 가격이 평균 白米 5두[8]였으므로 닥이 매우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물품 구입 후 지불 수단, 노동력 동원에 대한 보수 등으로 포와 마찬가지로 화폐 대체용이어서 수요가 더욱 필요[9]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종이의 소비가 촉진되었다면, 공납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 매월 초하룻날 供上하는 종이가……항상 품질이 열악합니다. 이번 달 차례인 고부 · 금구 · 태인 등 고을은 불량[不精]이 더욱 심하지만……부득이 받아들였으나 매우 부당합니다.(『선조실록』 201, 선조 39년 7월 1일)

> 근래 방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져 供上紙도 이 폐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방납인들이 지방[外方]에 큰소리 떠들어[聲言] '지방에서 보낸 종이는 모두 쓸모가 없어 점포[紙肆]에서 사들인 종이가 아니면 납품[封進]에 불합격[不合]이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자기들이 후한 가격[厚價]을 차지하고자 한 것으로

5) 최주희, 「15~16세기 別進上의 상납과 운영」, 『한국사학보』 46, 2012, 17쪽.
6) 노요한, 「조선초 서적간행의 토대 구축과 종이의 공급」, 『한문학논집』 60, 2021, 34쪽.
7) 김인규, 「조선 명종대 성주지역 사찰의 제지활동」, 『전통문화논총』 창간호, 2003, 98쪽.
8) 이성임, 「조선중기 유희춘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1998, 95쪽.
9) 김인규, 앞의 논문, 99-100쪽.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방 관리들이 그 술수에 빠져 비록 전주 · 남원도 현물[本色]의 상납에 수긍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광해군일기』 80, 광해군 6년 7월 2일)

임진왜란 이후 종이 공납과 관련된 비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당시 공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위 선조 39년(1606) 기록의 말미에 사관은 "공상지를 공납하는 규정의 시행이 이미 오래이나 그 폐단이 지금에 이르러 심해져서 규정에 어긋난 농간과 징수[勻蹬濫捧]가 날로 늘어나 1束의 값으로 무명베[木] 20필을 받으니 백성의 원통함이 매우 심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그런데 중간업자[방납인]의 납품 농간과 관련하여 '古阜 · 金溝 · 泰仁'과 '全州 · 南原' 등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남원과 전주 등 전라도 일대의 여전한 종이 공납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남원은 이러한 종이 공납의 전통과 현실이 지속되었던 것이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감상적인 차원에서 특산품 생산처라는 지위도 일부 갖게 되었다.

지금 造紙署의 咨文紙, 평강의 雪花紙, 전주 · 남원의 扇子紙 · 簡壯紙 · 注油紙 · 油芚과 같은 것은 실로 천하의 희귀한 바이며, 또 苔紙 · 竹淸紙도 매우 뛰어나다.(『임원경제지』 怡雲志, 文房雅製下, 紙, 東國紙品)

순창군수와 전라감사를 역임한 徐有榘(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는 19세기 초 조선의 종이를 '동국지품'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며 조지서의 자문지, 강원도 평강의 설화지와 더불어 전주 · 남원의 선자지, 간장지, 주유지, 유둔을 천하의 희귀한 것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면 마치 미술품 수집처럼 고아한 취미를 위해 생산된 물품으로서의 종이의 향유도 있었을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된 전주 · 남원의 종이[10] 생산은 대부분 공납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조선시대 사찰 僧役과 紙役

국가의 僧 동원은 고려 시대도 나타난다. '隨院僧徒'라 하여 필요시에 從軍僧 · 使役僧 · 工匠僧 · 僧匠 등의 구체적 기능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11] 따라서 조선도 초기부터 승역의 일종으로 紙役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10) 민간에서 종이의 수요와 필요성은 2011년 발견된 奇幸鉉(1843~?)의 『홍재일기』(1866~1911)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현재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홍해 마을 거주 유생으로 일기에는 "돈계의 김기택이 와서 전주에 간다고 하니 백지 1축을 부탁했다.(遯溪金基澤來到 而往全州云 故白紙一軸付託)"(1869.11.15.)고 하여 전주 종이의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순제(旬題)에 합격하니 상으로 부채 1자루, 백지 1속을 주었다.(旬題參格償給 扇子一柄 白紙一束)"(1868.윤4.15.), "부고가 도착하였기에 백지 1속을 가져가 조문했다.(訃告來到 故持白紙一束往弔)"(1897.9.24.), "백지 1속으로 부의하고 왔다.(白紙一束賻儀而來)"(1898.윤3.12.), "친구 김성수가 와서 백지 2축을 가져갔다.(金友聖淑來 白紙二軸持去)"(1899.3.1.), "친구 김운경이 와서 지금 비안도에 들어간다기에 백지 2속을 주었다.(金友云京來 今入飛雁島云 而白紙二束給)"(1899.3.18.), "장례일이 내일이라기에 돈 1냥과 백지를 부조하였다.(葬日明日云 故錢一兩 · 白紙賻給)"(1906.11.9.), "임실 종제가 (정읍) 고부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왔는데 백지 1동을 가져왔다.(任實從弟 自古阜與其子同來 白紙一同持來)"(1908.1.14.), "백지 1축의 가격을 6냥 주었다.(白紙軸価 六兩給)"(1910.12.22.) 등의 상품, 부조, 선물 지급 등 화폐 대용 수단으로의 활용 및 종이 시세까지도 확인시켜 주는데, 그 효용 가치 때문인지 "간밤의 꿈에 풀숲 길 가운데 백지 여러 속이 있어 처음 볼 땐 놀라고 두려워 감히 가져가지 못했으나 다시 돌아와 종이가 있는 곳에 이르니 종제가 가져가자고 권해 장지 · 초지 · 백지를 수습하여 얻으니 좋은 종이를 많이 얻어서 아들 · 조카와 나눠서 안고 왔다.(夜夢 草路中 有白紙數束 初見驚懼 不敢取得而去 還來至紙所 從弟勸取 故乃得收拾壯紙 · 草紙 · 白紙 多得好紙 與子姪分抱而來)"(1905.1.21.)라 하여 꿈속에서라도 종이를 얻고자 했던 욕망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11) 전영준, 「여말선초 국가 토목공사와 공역승」, 『동국사학』 40, 2004, 188쪽.

궁궐을 조성하는 각 도의 丁夫들을 돌려보내고 僧徒로 대신하게 하였다.……사대부가 집 한 채를 짓는 데에도 반드시 僧을 청해서 役을 시키는 것은 솜씨[手段]가 능숙[熟習]하기 때문이다.(『태조실록』 7, 태조 4년 2월 19일)

『통감속편』을 인쇄한 鑄字所의 僧人 · 書員 · 齋郞 등에게 모두 면포 74필, 정포 52필을 주어 포상하였다.(『세종실록』 21, 세종 5년 8월 9일)

조선 정부는 관련 전문 기술을 소유하고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중들을 동원함으로써 백성의 생계 보전도 가능하였기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였다.[12] 그런데 이 시기 선 · 교종의 국가 관리 '지정 사찰'과 왕실 보호의 '원당 사찰', 그리고 '일반 사찰'은 모두 토지를 소유하였다. 지정 · 원당 사찰은 賜給田 · 민전, 일반 사찰은 민전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토지를 사유한 사찰도 원칙적으로 공납과 잡역의 의무를 짊어진다.[13]

『자치통감』 인쇄하는데 50,000권은 造紙所에서 만들고, 105,000권은 경상도, 78,000권은 전라도, 33,500권은 충청도, 33,500권은 강원도의 모두 300,000권을 만들라고 명하고, 이어 전지하기를 "楮는 國庫의 쌀로써 바꿔주고, (종이뜨기는) 境內의 僧人을 役에 동원하되 의복과 음식을 주며, 쑥대[篙節]와 밀 · 보릿짚[麰麥節], 대껍질[竹皮] · 삼대[麻骨] 등과 같은 물건은 준비하기가 쉬우니 매 5分 마다에 닥 1푼을 섞으면 종이의 힘이 조금 강할 뿐만 아니라 책을 만들기 적합하고 닥을 많이 쓰지도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세종실록』 65, 세종 16년 7월 17일)

임술년에 예조에서 受敎하여 흥천사 · 흥덕사의 窓戶紙와 돗자리[席]를 3년에 한 번씩 長興庫로 하여금 수량에 맞게 새것으로 갈아 바꾸게[改排] 하였으나 紙 · 席의 공납에 한계가 있어 國用으로도 부족하니, 금후로는 두 절의 지 · 석을 각기 그 소속 諸寺에서 거두어 쓰게 하소서.(『세종실록』 109, 세종 27년 9월 1일)

세종 16년(1434)의 기록은 비록 중앙에 종이 제작 부서인 조지소가 있으나 다량의 종이 제작은 지방에 의지하였고, 종이 재료인 닥나무[楮]의 공급마저 충분치 않았으며, 지방에 배정된 製紙 작업에는 중들을 동원토록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거질의 책을 대량 인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지 방식도 적용했다. 이미 10년 전인 세종 6년에 "지조소에서 댓잎[竹葉] · 솔잎[松葉] · 쑥대[蒿節] · 창포대[蒲節]를 섞어 만든 四色冊紙를 진상하였다"[14]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紙料 시험은 기술 개량보다는 부족한 닥[楮]을 대체할 원료 다각화로 생산 확대를 꾀한 것을 의미한다.[15]

그런데 종이의 생산 · 공납에 중을 동원한 것이 일회성은 아니었다. 세종 27년(1445)을 보면 흥천사(선종)와 흥덕사(교종)도 종이 공납을 수행하였다. 궁궐과 중앙 각 관청의 창호지는 사찰의 정기적인 종이 공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더군다나 종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속 사찰까지 범위를 넓혀

12) 김선경, 「조선 초 승역(僧役) 관련 상직(賞職) 연구」, 『조선사연구』 33, 2024, 147쪽.
13) 김선기, 『조선후기 승역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 박사논문, 2023, 34쪽.
14) 『세종실록』 25, 세종 6년 8월 2일.
15) 박준호,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동양학』 66, 2017, 10쪽.

공납을 받으려고 하였다. 어쨌든 이것은 사찰 紙役이 조선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한편, 원당 사찰의 경우도 종이 공납에 참여하였다.

> 禪宗·敎宗·圓覺寺에서는 舊例에 따라 매년 端午 전에 둥근 부채[圓扇]를 바치는데 이에 이르러 세 사찰이 진상을 빼먹었다. (이에) 전교하기를 "僧은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부채를 만드는 일이 그 役인데 지금 무슨 일로 진상을 빼먹었는가? 필시 사정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推問하여 아뢰라"고 하였다.(『성종실록』 228, 성종 20년 5월 7일)

위의 기록에는 원각사에서도 부채를 진상하지 않자 '오직 부채를 만드는 일만이 그들의 역'이라며 사정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로 보면 지정 사찰뿐만 아니라 원당 사찰들도 중요한 날에는 方物을 진상한 사실이 드러난다. 선종 소속 18사는 흥천사, 교종 소속 18사는 흥덕사, 내수사 소속 12사는 원각사로 각각 상납하였고 이들 사찰은 다시 예조와 내수사로 진상하였던 것이다.

> 무릇 寺刹에 대해서는 공부 외의 역은 면제[復役]한다.(『경국대전』 4, 「兵典」, 復戶)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찰의 잡역 면제가 법제화되었다. 복호란 徭役 중에서도 잡역의 면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경국대전』에 명시된 조치는 조선 초의 관례였던 잡역 면제를 제도적으로는 확립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 사찰은 여전히 민호와 마찬가지로 공납과 잡역을 부담하였다.

>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諸邑守令의 造紙·造扇, 포도·송이버섯·松花 채취 등의 모든 雜事로 말미암아 僧人이 役使되어 쉬지[安接]를 못하고, 또 儒生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수령이 법을 받들어 애민[撫字]하려는 뜻을 위배하니, 그것을 수령에게 깨우치고자 하니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세조실록』 3, 세조 2년 3월 5일)

> 李守恭이 또 "寺社田을 청컨대 모두 빼앗아 향교에 나누어 주어서 유생의 朝夕 공급을 넉넉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노사신이 "이수공이 아뢴 바는 僧徒가 사사로이 매입하여 농사짓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李克增이 "중들은 비록 스스로 농업을 하더라도 貢賦와 徭役이 모두 編戶와 같은데 무슨 명목으로 몰수하여 향교에 주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성종실록』 236, 성종 21년 1월 17일)

세조는 각 도의 관찰사에게 고을 수령이 중에게 종이, 부채 제작과 포도, 송이, 송화 등의 채집을 부과하는데 이를 줄이고, 사찰에 유생 출입도 금지할 것을 명하였다. 또 성종 21년(1490)의 경연에서는 절의 토지를 거둬서 향교에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들도 '공부와 요역이 모두 편호와 같다'며 회수 명목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중의 사적 소유 토지가 민호와 마찬가지로 편제되어 부세가 책정된다는 것을 알려 줌과 동시에 각지의 수령은 사찰에 종이와 부채의 제작, 농산물 채집, 유생 접대와 같은 잡역까지 부과하였음도 보여준다.

이런 16세기 일반 사찰의 상황은 『묵재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성주 안봉사는 寺有地 30마지기[4,500평]와 寺位田 1결을 소유한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16] 그런데도 토지에 安山戶라

는 貢役戶가 보여 성주 관아의 공물 조달 체계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판관에게 편지로 문안하고 이어서 安山戶의 공물인 白楮 · 은어 · 호도 · 송이 등의 물품을 줄여줄 것을 부탁했더니 바로 자문을 보내주었다.(『묵재일기』, 1555년 7월 29일)

> 안봉사 승려 靈昭가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데 수량을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묵재일기』, 1546년 7월 3일)

안산호가 담당한 공물은 닥나무, 은어, 호도, 송이 외에도 다양하였다. 물론 이런 물품은 輪回分定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종이 제작의 수효를 줄여달라는 청원에서 보듯이 紙役의 가중은 여전하였다.

17세기에도 지역은 사찰 승역의 주요 항목이었다. 이는 종이 생산 시설의 피해와 연관이 있다.

> 승문원 사자관 文繼朴이 상소하여 "……造紙局은……난리를 겪은 나머지……更張하지 못하고 있으며, …… 또 솜씨 좋은 紙匠이 많지 않은데 만약 僧人에서 종이 잘 만드는 자를 뽑아 …… 노는 들판에 닥나무밭을 개간하게 하고 …… 때때로 紙匠의 임무와 혹 助砧軍의 역을 함께 하도록 하면 …… 점차 효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선조실록』 78, 선조 29년 8월 13일)

임진왜란 이후 조지서는 紙匠과 도침군 등 노동력의 미확보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고, 시설과 도구마저 미비하여 품질 저하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는 결국 외교 문서용 종이 제작에 차질을 가져왔기에 시급한 건물 복구와 지장 모집이 제안되었는데 특히 부족한 지장 대체 방법으로 중들을 이용하여 생산을 전담케 하려 했다.

이것은 사찰 승려를 공식적인 관서에 立役시키려는 노력이었다.

> 조지서는……변란 이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평소 81명이던 紙匠은 지금 단지 4명이고, 60명이던 도침군[搗軍]은 지금 5명입니다.……器具와 匠役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紙品이 복구된 상태이기를 바라겠습니까.(『승정원일기』 15, 인조 4년 8월 4일)

> 조지서에 僧軍을 배정해 보내는 일에 대한 草記와 관련하여, '10명은 많은 듯 하니 숫자를 줄여서 정하여 지급하라'고 비답을 내리셨습니다.……이제 3명을 줄여 7명을 매달 배정해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승정원일기』 68, 인조 17년 3월 10일)

병자호란 이후인 인조 17년(1639)에 매달 7명의 승군을 조지서에 입역시켰다. 그러나 인조 4년 기록을 보면 별도의 도침군이 언급되지 않아, 승군이 지장 겸 도침군의 역할까지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노동력 부족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사찰승을 紙役에 동원한 것은 양역을 빠져나간 피역자를 색출하여 역을 부과함으로서 良丁의 수를 확보하려 한 의도 때문이다. 더불어 義僧을 紙匠으로 활용한 또 다른 이유는 과중한 紙役을 피해 사찰에 투속한 紙匠들도 적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있었다.[17] 그러나 지역승은 상시 인력이 아니므로 품질 유지

16) 이성임, 「16세기 지방군현의 입역체제와 승려의 부역(賦役) -경상도 성주의 안봉사를 중심으로-」『한국불교사연구』 8, 2015, 189쪽.

는 불가하였기에 조지서의 紙品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결국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결과였다.

이처럼 구조적인 조지서의 기능 미흡은 종이 생산과 공급을 오롯이 지방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 지소의 기능도 대동법 시행으로 퇴락한 상태였다.

> 앞서 전라감사가 호조에 납부하는 白綿紙 · 大好紙 · 小好紙를 전례대로 상인[廛人]이 갖춰 납부하게 해달라는 일을 陳達하였습니다.……대동법 실시 전에는 白楮 및 (종이 제작에) 들어가는 재[灰]와 도침군을 民結에서 내어 紙匹이 고르게 공급되고 닥나무밭도 면세하면서 또한 많이 배양하였기에 종이가 귀하지 않아 상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僧徒와 백성[小民] 또한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대동법 시행 이후 紙役을 전부 市廛에 맡겨 중과 백성은 닥나무를 심는 일이 없으며 각 고을 또한 紙所를 혁파하였으니 지금 外方의 紙價가 급격히 오르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승정원일기』 396, 숙종 27년 3월 5일)

숙종 27년(1701)의 전라감사 장계는 대동법 실시 이후 종이를 전부 시전에 맡겨 중과 백성은 닥나무를 심지 않고 각 고을은 지소를 혁파하여 종이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대동법 시행 전에는 현물 중심의 공납제를 바탕으로 종이 상납이 이루어졌는데 시행 이후 지방 군현에서는 田結을 기준으로 일정 세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자체적 종이 생산이 지방 지소의 유지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 대동법 실시 후에 삼남의 楮田이 모두 곡식을 심는 땅이 되어 종이가 귀해졌다.(『비변사등록』 50, 숙종 25년 12월 1일)

광해군 즉위년(1608)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며 숙종 무렵에는 닥나무 재배지마저 농경지로 전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수요까지 줄어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사회가 안정되면서 다양한 수요가 증대하였다. 17세기 충청도 덕산 출신인 趙克善(1595~1658)의 『忍齋日錄』(1609~1623)과 『冶谷日錄』(1624~1635)에 따르면 당시 사대부의 일상에서 종이의 쓰임은 첫째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에서의 사용, 둘째 텍스트를 담는 매체로서 기록 작성에 필수적인 물건, 셋째 선물 · 부조의 중요 수단 등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었다.[18]

대외적으로도 병자호란(1636) 이후 효종 10년(1659)까지 이뤄진 132번의 사행에서 302,500권의 방물지가 지출되었다. 연평균 13,152권이 소요되었는데, 인조 때 평균 12,615권, 효종 때 평균 13,850권이었다. 여기서 고정 지출인 세폐지 5,000권을 합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간 평균 18,152권의 종이가 외교를 위해 소비된 것이다. 이처럼 종이가 다른 것에 비해 많은 수량이 책정되었던 것은[19], 청의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는 필요 때문이기도 하였다.[20] 따라서 이런 세폐 · 방물의 부담도 종이 지출량을 이전보다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21]

17) 김삼기, 「조선후기 관영지소의 변화」, 『중앙사론』 17, 2003, 10쪽.
18) 손계영,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조극선의 일기를 중심으로」, 『장서각』 38, 2017, 60쪽.
19) 홍선이, 「歲幣 · 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인조대 세폐 · 방물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5, 2014, 274쪽.
20) 이승민, 「조선시대 종이의 생산과 외교적 활용」, 『한일관계사연구』 83, 2024, 149쪽.
21) 김선기, 앞의 논문, 83쪽.

종이 문제는 근년에 오면서 청국의 요구가 전에 비하여 배나 더 됩니다. 금년 정월 이후 사용된 수량을 들어 말하면, 白綿紙 13,300권이고, 霜華紙는 290권으로써 앞으로 歲幣 및 冬至 등 3차례의 방물로 사용되어야 할 수량도 9,000권에 달합니다. 만약 三南에 分定하지 않는다면 달리 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이는 곧 연례적인 役이어서 방백과 수령이 미리 처리[料理]하여 닥나무가 잘 자라나는 계절에 앞서 사들여서[貿得] 종이를 만든다면 관에서 지급하는 가격으로 오히려 준비해 둘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경 쓰지 않다가 배정하는 시기에 미쳐서야 기한을 정해 民結에 책임지우니 백성의 원망이 심합니다.(『승정원일기』 105, 인조 27년 3월 28일)

따라서 중앙 정부는 막대한 양의 세폐·방물지를 감당하기 위해 각 고을에 나눠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삼남 지방의 고을이 생산처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다만 지방관들이 연례적인 업무임에도 무신경하다가 기한이 닥치면 백성을 독촉하여 원한을 사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대동법 시행 이후 일반 사찰의 종이 공납은 경상도 남해 花芳寺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는 숙종 12년(1686) 3월에 마련된 「寺中各項節目」이란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종이 제작을 주관하는 紙大同과 지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 화전지, 유지, 장지, 후백지, 피지, 백지, 선자지, 도배지, 진상지 등이 생산되었는데 사용처도 선혜청, 경각사, 대구감영, 진주진영, 남해현 등으로 다양했다.[22]

이처럼 17세기 이후 사찰이 생산처로서 중앙부터 지방 군현에 이르는 각급 기관에 종이를 상납하였다. 두 차례의 전란과 자연 재해, 기근, 田地와 인구 감소, 이에 따른 백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동법 실시 등은 승역 강화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고, 사찰 紙役도 정례화되면서 사원 경제는 피폐해져 갔던 것이다.[23]

한편, 18세기에는 僧役과 관련하여 출가 문제가 부각된다. 이것은 양역 폐단이 불거지면서 백성의 도피처로서 사찰이 주목된 것과 관련된다.

군정에서 빠지는 방법[失丁之道]은 다섯 가지인데, 첫째는 호적에서 누락되는 것이고, 둘째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이고, 셋째는 僧徒로 들어가는 것이고, 넷째는 이사해서 피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탈피를 도모하는 것이다.(『승정원일기』 588, 영조 1년 3월 11일)

村婦가 딸을 낳으면 기뻐서 축하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위로하고 조문하여 머리털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역이 헐거운[役歇] 각처에 投屬하거나, 끝내는 또 삭발하고 중이 되니 사정이 심히 불쌍합니다. 이에 영남 한 도로 말한다면 도내를 통틀어 大刹이 많게는 300여 소에 이르고 중이 각각 4~500명으로, 큰 곳은 1,000여 명에 가깝고 작은 곳도 2~300명 이하는 아닐 것이니, 총계가 거의 10여만 명이나 될 것입니다.(『승정원일기』 856, 영조 13년 9월 11일)

아들 하나를 낳으면 百役이 거듭 이르기 때문에 거개가 깊은 산속으로 도망해 들어가 僧徒가 되기를 원해 열 집 가운데 아홉이 비는 탄식이 있으니 팔도가 모두 그렇습니다.(『영조실록』 61, 영조 21년 5월 13일)

현종 때의 경신대기근(1670~1671), 숙종 때의 을병대기근(1695~1699)에 따른 여파로 인구는 급격

22) 이상백, 「조선 후기 남해 화방사의 製紙와 서적 刊印 연구」 『서지학연구』 89, 2022, 117-118쪽.
23) 오경후, 「광해군·인조 년간 僧役의 실제」, 『한국불교사연구』 6, 2015, 49쪽.

히 감소했는데도, 양난 이후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군문이 증설되고 감ㆍ병ㆍ수영도 군사력을 증강시킴에 따라 軍額은 증대하였다.[24] 이것은 본격적인 양역 문제로 전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숙종 때 군액 감축을 시도하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영조 때에도 역시 양역 확보 문제가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였다.[25] 그런 상황에서 위의 기록들처럼 영조 1년(1725)에 양역 폐단의 하나로 출가가 언급되었다. 영조 21년(1745)에도 양인들의 출가를 보고하였는데, 영조 13년(1737) 기록에는 경상도의 중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순수한 믿음의 귀의가 아니라 양역 회피 수단으로 사찰을 선택하였다면, 남은 백성의 부담과 피해는 더욱 심했을 것이다.

> 사방에 일이 많아 백성이 부역을 피해 대부분 중이 되었습니다.……良役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중이 되었을 뿐이니, 그 사정은 참으로 슬픕니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良役廳을 설치하고 변통을 강구하여 2疋을 감하여 1필로 줄인다면 백성들이 難堪하지 않을 것이고 중이 되는 자 또한 적을 듯합니다.(『승정원일기』 578, 영조 즉위년 11월 3일)

> 良役의 절반을 감하라고 명하였다.(『영조실록』 71, 영조 26년 7월 9일)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였고,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 반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논의는 빈번하였다. 실제 영조 즉위년(1724)의 夜對 자리에서도 검토관 李眞洙가 양역 회피를 위해 대부분 중이 된다는 논리를 펴며 양역 감축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균역법이 양역의 감필을 실시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역의 도피 방식으로 출가를 선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된다. 균역법 시행으로 이미 출가한 백성의 환속이 시작되었고, 정부의 입장에서 승도가 감소하는 것은 균역법이 이로운 제도였음을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균역법으로 民役이 경감되었더라도 사찰 僧役은 여전히 견고한 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 僧徒 역시 避役하려는 良丁인데 이들은 公私의 요구[責應]로 인한 使役이 번거롭고 무거운 만큼 지금 別役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승정원일기』 872, 영조 14년 5월 22일)

> 왕이 "僧人의 身役이 또한 고달프다"고 말했다.(『영조실록』 74, 영조 27년 11월 26일)

영조 14년(1738) 기록도 중들은 공적ㆍ사적인 요구와 응대로 사역이 많은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조 27년(1751)에도 승역의 고달픔이 거론되었다. 영조는 "저들이 비록 緇徒이나 또한 내 백성[民]이고, 僧徒가 항시 괴로운 것은 본래 아는 바"라고 먼저 언급하였다. 이런 기록들은 균역법 시행에 따라 사찰 승려가 감소하는 것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승역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24) 김순규, 「조선 후기 사찰 紙役의 변화」, 『청람사학』 3, 2000, 275쪽.

25) 이를 해결할 대책의 하나가 영조 5년(1729)의 「五家統法申明舊制節目」이다. 효종 때부터 시작된 논의를 수렴하여 숙종 때 양정 수괄 및 부세 행정의 안정적인 유지, 향촌 질서와 치안 유지 등의 목적으로 「오가통사목」이 마련되었으나 영조 때에 이르러서 통수 역할과 책임 증대, 통 내부 구성원의 상호 감시와 규율 강조 등 국가의 개입과 강제성 강화로 나아간다.(이민정, 「영조대 五家統法 시행과 국가의 지방통치 성격」, 『사회와 역사』 142, 2024, 162쪽.)

아니다. 줄어드는 중의 숫자에도 승역은 그대로였기에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紙役은 여전한 비중을 가졌다.

> 근년 이래 紙品의 허비[過]가 전일에 비해 배에 이른다.……어람용 책자만 하더라도 지금의 1권이 옛날의 2권에 해당하는데 근년에는 더욱 심하니 이 또한 과소비[浮費]이다. 아! 이 괴로운 民役을 僧徒가 하는데 그 또한 백성이다. 종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안다면) 이 또한 民僧에 대한 폐단이다. (『비변사등록』 120, 영조 25년 9월 14일)

양역의 변통이 대세로 정착되던 영조 연간에도 종이 소비는 전에 비해 배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대동법 시행으로 지방 지소의 몰락, 다시 균역법 시행으로 나타난 중 숫자의 감축은 이제 각 사찰에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은 시쳇말로 '사찰이 폭망[寺門凋弊]'하고 '중이 호적을 파버리는[僧徒疲殘]' 시대였다.

4. 남원현 사찰의 상황과 종이 공납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역의 하나로서 紙役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종이 공역은 후기로 내려올수록 더욱 고착되었다. 조선 후기 중앙의 제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지방 의존이 강화되었고, 여기에 대동법 확대와 균역법 시행 등에 따라 사찰의 종이 공납이 더욱 횡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도 남원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영조 연간의 종이 공납과 관련하여 남원현과 남원 지역 사찰의 승역 부과가 보통이 아니었음이 기록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영조 연간 남원의 생산 종이를 살펴보면 『남원현공사』에 厚白紙, 空白紙, 災實紙, 草注紙, 楮注紙, 啓目紙, 大油芚, 祝文紙, 冊紙, 白紙, 窓戶紙 등이 보인다. 『남원현첩보이문성책』에는 別狀紙, 狀紙, 塗褙紙, 厚白紙, 冊紙, 草注紙, 白綿紙, 禳災紙, 壯白紙 등이 언급되었다.

이런 종이의 상납에 대해 일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巡營에 보고함.……궐내에서 사용[內用]할 막중한 종이를 장차 징봉할 곳이 없으니……본 현에서 監官과 色吏를 별도로 정해 1부당 2두씩 거두게 하여 좋은 품질의 別狀紙 400속을 색리를 정해 바쳐 올리게 하되, 거행 상황[形止]을 첩보하라.(『남원현첩보이문성책』, 영조 11년 10월 15일)

> 순영에 보고함.……호조에 바치는 『동의보감』에……들어간 종이는 狀紙 49속과 백지 8속이었다.(『남원현첩보이문성책』, 영조 12년 12월 22일)

> 순영에 보고함.……갑인년(1734)에 진상한 『동의보감』 冊紙의 草注紙 15속, 楮注紙 4속……병진년(1736)에 시강원에 납부할 『주자대전』 印出에 들어간 저주지 13속……(『남원현공사』, 영조 13년 3월 16일)

전라도 관찰사는 영조 11년(1735)에 남원현에게 지시하여 궐내에서 사용할 종이 공급이 원활하도록 별도의 관리를 두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또 『동의보감』이나 『주자대전』 등을 찍을 종이를 상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종이 공납은 남원현 紙所를 통해서도 일부 이뤄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승역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天彦·寶玄·歸政 등의 절에 傳令함. 빨리 거행할 일. 방금 도착한 호조의 關文에 근거한 巡使道의 관문에, "『宋名臣言行錄』과 『大學演義補』를 어람하도록 진상할 것과 경연에 頒賜하여 교부할 것 등의 책을 금방 인출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종이가 누천 권에 이른다. 서울에서 마련할 방도가 전혀 없어 三南에 分定하였으니, 이달 열흘 전에 京司에 밤새 올려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後錄 안에 남원은 草注紙 80권을 배정하였는데 기한이 매우 급박하니 많은 紙役을 각 절에만 책임지우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80속 가운데 50속을 세 절에 배정하고, 30속은 紙所에서 떠낼 계획이다. 본 절에서 떠내는 재료[楮物]의 본값[本價]은 빨리 받아가서 분부를 듣고 거행하되, 그 종이[紙物]은 이미 더없이 소중하게 쓰던 물건이니 대충 떠내서는 안 된다. 각별히 가시를 제거하고 티 없이 아주 흰빛[精白]으로 떠내어 기일에 맞춰 납부하고 기일에 이르지 못해 크게 문제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남원현공사』, 영조 12년 4월 3일)

중앙 정부는 어람용과 경연용으로 사용될 『송명신언행록』과 『대학연의보』를 찍기 위해 三南에 종이 공납을 지시하였는데 남원현에서는 초주지 80권이 필요했다.[26] 이에 따라 남원 현감은 30속을 紙所에서 만들고, 나머지 50속은 '天彦寺[27] 초주지 19권, 寶玄寺[28] 초주지 17권, 歸政寺[29] 초주지 14권'으로 배당하였다. 그러면서 종이는 "대충 떠내서는 안 된다"거나 "가시를 제거하여 티 없이 아주 흰빛으로 떠내고", 반드시 기한을 맞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사찰 紙役은 위의 세 절 뿐만 아니라 다시 두 개의 절이 추가된다.

> 同日에 난계·풍곡사 등에 전령함.……蘭溪·風谷寺는 본시 오래되어 쇠잔한 절[殘寺]이므로 각 절의 分定 중에는 擧論하지 않았다. 지소에서 떠낼 재료[楮物]를 난계·풍곡사에서 구해서 납부[覓納]하도록 배정하니 본값을 당일 내 빨리 와서 받으며, 재료를 한편으로 와서 바쳐 일각이라도 지체하여 크게 문제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남원현공사』, 영조 12년 4월 3일)

위에서 언급한 두 절은 '殘寺'라고 한 것을 보면, 앞선 세 절보다도 더욱 곤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계사[30]에는 '정저(正楮) 1백 36근'이, 풍곡사[31]에는 '정저 1백 4근'이 배당되어 재료[楮物] 값을 받는 대신에 직접 구입하여 납품해야만 했다. 앞선 세 절보다는 배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실제 관아에서 제공하는 원가[本價]와 거래를 통한

---

26) 종이 단위로서 1권은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 말린 종이 20장이다. 이 10권이 1축(軸)이고, 10축이 다시 1동(同)이 된다. 다만 능화지는 100장을 1축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권'을 '束'으로 부르는데 속은 끈으로 묶은 형태만을 말해 '권'을 '속'으로 보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이다.(하혜정, 「종이 單位考」, 『동양고전연구』 18, 2003, 226쪽.)

27)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소재. 『동국여지지』 5하, 남원도호부 사찰. "**甘露寺**[在智異山 又名**天隱寺**]" ; 『용성지』(1752) 4, 佛宇. "**甘露寺** 在所義坊東 智異山南 俗稱**天彦寺** 有甘泉 故名甘露…屬菴…波根" ; 『신증동국여지승람』 39, 전라도, 남원도호부 佛宇. "波根寺[在智異山]"

28)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소재. 『신증동국여지승람』 39, 전라도, 남원도호부 佛宇. "寶賢寺[在馬行山]" ; 『동국여지지』 5하, 남원도호부 사찰. "寶賢寺[在萬行山]" ; 『용성지』 4, 佛宇. "寶玄寺 在馬行山……城南寺 卽寶玄本寺 今廢"

29)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소재. 『동국여지지』 5하, 남원도호부 사찰. "**歸政寺**·風谷寺[俱在萬行山]" ; 『용성지』 4, 佛宇. "**歸政寺** 在萬行山" 귀정사의 옛 이름이 만행사이다.

30)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수장리 산53 소재. 『용성지』 4, 佛宇. "**蘭溪寺** 在靈溪坊 楓岳西"

31)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소재. 『동국여지지』 5하, 남원도호부 사찰. "歸政寺·**風谷寺**[俱在萬行山]" ; 『용성지』 4, 佛宇. "**風谷寺** 在萬行山"

조달[貿納] 가격 사이에는 시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자란 부분은 당연하게도 납품 사찰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소용 재료값이었다. 그렇다면 난계사와 풍곡사가 재료를 공급하고, 지소는 종이만 떠내는 구조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원현에 배정된 草注紙 80권의 생산은 거의 사찰이 수행하는 것이라 이해해도 무방하다.

> 순영에 보고함.…… 계축년(1733) 단오에 진상할 大油芚을 봉진할 때……유둔 등의 값을 收租에서 會減한 것이 무려 70여 석이나 되니……종이[紙物]에 들어가는 白楮 천여 근과 들기름[法油] 20여 斗를 이 本價로 바꾸어 사서 마련하되, 본값이 부족하여 본 현에서 매번 3분의 1이나 혹 절반을 더 보태는 폐단이 있었습니다.……紙役이 본래 거대하고 많아[浩繁] 紙匠의 역가 외에도 종이를 매끄럽게 하거나 닥나무를 치거나[搗砧扣楮] 이런 저런 일이 많아 役軍들의 값이 20여 석의 쌀로는 태반 부족하여 또 본 현에서 더 보태어 지급한 것이 거의 100석의 벼에 가깝습니다.(『남원현공사』, 영조 13년 3월 1일)

종이의 생산과 진상에 남원현 관아의 노고도 있었다. 영조 9년(1733) 단오절 진상용 대유둔 마련 과정을 보면 비용이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둔지는 조선 초기부터 전주와 남원에서 봉진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남원의 특산품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중앙에서 70석의 비용을 할당하였지만 초과 비용을 상당히 정산하는 것이 남원현의 부담이었다.

원래 단오절 대유둔 진상에 계상된 비용[本價]은 70석인데 이것은 '白楮 1천여 근과 들기름 20여 말'의 재료값이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실제로는 70~50%만 지급된 것 같다. 따라서 남원현에서 매번 1/3 내지 절반을 자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생산 인건비[役軍價]도 20석으로는 부족하여 다시 남원현에서 추가 지출을 하였다. 이렇게 계상하여 나온 총금액이 100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선 인조 4년과 17년의 조지서 복구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승군이 지장 겸 도침군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면, 남원 지소의 지장과 도침군도 대부분 중들에 의해 충당되었을 것이다. 이러면 영조 12년의 어람용과 경연용 인출과 영조 13년의 단오 대유둔 진상 등 종이 공납에 필요한 노동력은 거의 5개 사찰에서 감당하여 해결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에 남원현 소재 사찰들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 同日 순영에 보고함. 相考할 일. 본 현이 비록 大邑이라 말하지만 단지 宝玄·天彦·歸政 등 3개 절만 있으며 (그마저도) 寺門이 凋弊하여 僧徒가 지치고 쇠잔[疲殘]합니다. 서울 각 관사 및 營門과 본 관아[本官]에 종종 책임지는[責應] 것이 극히 번거롭고 힘드니 모두 逃避하여 장차 텅 빌 지경[空虛之境]에 이르려 합니다. 각 절의 僧人이 이제 또 聯名으로 와서 호소하여 그 大小弊端의 승역 중에서 가장 難堪한 조항 10여 가지 일을 올렸습니다.(『남원현첩보이문성책』, 영조 12년 12월 22일)

영조 12년(1736)에 천언사 등 3개 사찰도 '寺門凋弊'하여 '僧徒疲殘'할 상황인데도 각 영문과 남원현감 등의 요구 사항이 빈발하므로 '모두 도피하여 텅 빌 지경(皆逃避將至於空虛之境)'이라 호소하고 있다.

> 백성의 요역[民徭] 중에 白綿紙가 가장 막중한데 각 邑에서는 모두 僧寺에서 책임져 마련토록 합니다. 중의 능력이 有限하니 한쪽으로만 침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라 감영이 전례에 따라 바치는 종이도 적지 않은데 근래에 또 新規를 만들어 1년에 매번 大刹은 80여권, 小刹은 60여권을 올리라

하므로 僧徒들이 도피하여 여러 절이 텅 비었습니다.(『현종실록』 18, 현종 11년 10월 7일)

僧徒를 지탱[支保]할 수 없어 옛 巨刹이 오늘날 무성한 풀로 변하였으나 중이 賦役을 도피하는 것은 나쁜 짓인 듯 합니다. 義僧의 番上, 僧軍의 調發, 종이[紙地]의 添納에 이르러서는 또한 비로소 국가를 위한 부역이 아님이 없습니다.(『비변사등록』 59, 숙종 34년 2월 30일)

이런 현상은 이미 현종 11년(1670) 매년 사찰에 종이 공납을 요구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여러 사찰이 텅 비게 되었다(諸刹蕭然)'는 내용이나 숙종 때 '종이의 첨납(紙地之添納)'을 지적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남원현첩보이문성책』의 영조 12년 기록에는 '승역 중 가장 난감한 조항 10여 가지 일을 보고(僧役中 最所難堪者條 進十餘事)'하였는데 몇 가지를 보면, 우선 眞殿과 典祀廳에서 매년 2~3차례씩 제사를 거행할 때마다 각 사찰에서 厚白紙 20속씩 값도 받지 못하는 無價上納을 하였고, 營門에 공납 종이는 1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 구입하는 것이 전례인데 작년 이후로는 세 차례나 상납하였지만 가격을 흉년에는 곡물이 귀하니 돈으로 지급하고, 풍년에는 곡물이 흔하니 현물로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호조에 바치는 『동의보감』 책지로 들어가는 장지 49속과 백지 8속의 값은 1속에 3~4푼으로 싸게 책정되어 '白徵'과 같다고 토로하였다. 실제 숙종 30년(1704)의 백면지 공납 논의 기록에는 '조정에서 정한 원가(朝家定給之價)'가 '현실가의 1/5(旣不滿五分之一)'이라고 나온다.[32] 하지만 숙종 26년(1700) 경상도 의흥현의 사찰에서 백면지 21권을 공납 받으면서 호조에서 1권 값으로 지급한 '대동미 5말이 현실가의 1/10(五斗之米 僅爲十分之一)' 정도에 불과하였다.[33] 중앙의 피상적인 책정과 지방관아의 실제적인 징수 사이의 현실감을 고려하면 심할 경우 종이 공납의 현실가는 1/10에 가까웠을 것이다.[34]

여기에 영조 10년(1734)에 營門에서 分定한 『주자대전』 인출용 초주지 15속과 후백지 30속의 값으로 쌀 9석 10두를 이미 상납했는데 해당 색리가 중간에서 다시 이중 징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종이 공납은 처음부터 白徵과 勒買의 성격을 면할 수 없었다.

순영에 보고함.……본 현에 있는 내수사 소속의 전답 19결에……2두의 세를 다 거두더라도 그 수가 전부 190석이 되고, 이를 장시에서 곧바로 돈으로 바꾸면[市直貿錢] 또한 130~40냥에 불과합니다. 본 현이 비록 종이를 생산하더라도 境內에는 楮物이 극히 귀하므로 진상 紙物에 들어갈 일체의 닥나무는 모두 영남에서 취하여 마련했습니다. 지금 狀紙 1속의 값이 5~6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400속의 元價가 거의 200여 냥을 넘습니다. 내수사에서 2두 세를 요구[責捧]하였어도 400의 장지를 사서 납부[貿納]하라는 것은 먼 지방의 物情을 잘 헤아리지 못한 탓인 듯합니다.(『남원현첩보이문성책』, 영조 11년 10월 15일)

앞서 언급한 영조 11년(1735)의 궐내 진상 별장지 400속의 마련에 대해 전라도 관찰사가 거행

32) 『승정원일기』 416, 숙종 30년 1월 29일.
33) 『義興縣公事』, 숙종 26년 4월 14일.
34) 김순규, 앞의 논문, 284쪽.

상황을 첩보하라고 지시하자 남원현에서는 위와 같이 보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상용 별장지 400속을 채우기 위해 내수사 소속 전답 19결에서 2두의 세를 모두 거둔다고 가정해도 190석에 불과한데 당시 장지 1속의 값은 5~6전이니 400속이면 거의 200냥 이상이 원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원현에서 종이 재료 즉, 닥나무 생산량이 많지 않아 경상도에서 사오기 때문에 재료값이 장지 1속에 5~6전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수사의 요구와 관찰사의 지시가 지방의 물정을 모르는 조치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중앙-순영(관찰사)-남원현(수령)-아전-사찰로 연계되는 구조 속에서 종이 공납은 건드릴 수 없는 수준으로 폐해를 만연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寺弊僧殘' 현상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 구례현에 移文함. 相考할 일. 弊縣의 天彦寺는 처음에 유명한 大刹이었으나 근래 심하게 凋殘하고 승역이 매우 힘들어[煩重] 장차 空虛之境에 이르렀습니다. 同寺의 照察 · 元甘 · 六森 등은 원래 거처하던 중으로 儀僧의 차례가 된 役을 피하려는 꾀를 내어 잠시 貴縣의 境內에 숨어 지낸다고 중이 와서 刷還하기를 청했으나……실제 와서 지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현이 이로 인해 분노하고, 또 華嚴(寺) 僧의 무고를 듣고 폐현 천언사에 거처하는 중인 察眼 · 日信 · 斗宗 · 妙行 · 照元 · 萬重 · 悟澤 · 入益 · 日嘗 · 再明 · 萬澄 · 玄信 · 守釆 · 進己 · 順益 등의 族屬으로 멀든 가깝든 간에 귀현에 사는 사람을 일체 가두고[囚禁] 바야흐로 빨리 오라 독촉[星火督還]하며, 천언사와 귀현이 접경인데 중들이 가서 경작하고 돌아오는[往耕歸市] 것을 일체 엄금하고, 혹 入境者가 있으면 떼로 일어나 무리로 공격하여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일이 매우 놀라 탄식하고 도리어 매우 부끄럽고 의아합니다. 폐현에서 진상하는 각 항목의 紙物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지게 하는데 凋弊함이 특히 심한 나머지 지금 이 뜻밖의 일로 인하여 얼마 안 되는 殘僧마저 모두 흩어질 계획을 품으니 어찌 대단한 深慮에 처하지 않겠습니까.(『남원현공사』, 영조 13년 4월 6일)

> 46坊 儒生에게 諭示함.……처소는 부근 公閑村舍 혹은 서당 · 서원 · 齋宮으로 하고, 紙役 사찰에 이르러서 중들에게 폐를 끼치면 곤란하니, 出接하지 말게 하라.(『남원현공사』, 영조 12년 8월 7일)

위의 영조 13년 기록에 따르면 남원도 사찰들이 지속적으로 퇴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찰이었던 천언사는 점점 쇠락하는 가운데 남은 중들도 승역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근 구례현으로 도망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남원현과 구례현 사이에 체포 문제도 야기되었다. 그런데 사찰의 퇴락은 천언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근 화엄사 중의 고소도 각 사찰 사이에 계속 줄어드는 중들 때문에 싸운 것을 보여준다. 구례 화엄사에서도 숫자가 감소하니 천언사 소속으로 구례현에 적을 둔 중들의 거취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래저래 천언사의 凋殘이 심해지는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남원현에서도 유생의 폐단이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감이 공개적으로 "紙役하는 사찰에 가서 승도에게 폐를 끼쳐서 곤란하니 절대 출입하지 말라"고 유시하였지만 과연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이후의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남원 지역의 사찰 상황은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양산 통도사에서도 순조 27년(1827)에 잡역의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종이를 생산하는 紙役이 너무 심하여 5~600명이던 승려들이 4~5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35]

35) 이종수, 「조선 후기 고성 옥천사의 중창과 僧役 문서」, 『남명학연구』 76, 2022, 277쪽.

湖南紙邑에는 폐단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淳昌이 가장 심합니다.…… 三軍門에 받치는 軍布를 종이로 代納하면 그 수량이 모두 7천여 속이 되고 매 속을 값으로 치면 시가[時直]에 비해 겨우 3분의 1이 됩니다.……僧役의 괴로움이 거듭되고 사찰의 폐단[寺弊]은 지탱하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平民에게서도 긁어가니 그 피해가 한 고을[一境]에 두루 미칩니다.(『비변사등록』 169, 정조 10년 7월 24일)

또한 위의 정조 10년(1786) 기록에 따르면 남원현에 인접한 순창현에서도 삼군문에 대납하는 종이가 7,000속인데 시가의 1/3정도만 지급하였다고 나온다. 이 때문에 승려들은 종이 생산을 큰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 폐해는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영조 시기 이후에도 남원현 일대의 사찰 紙役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시대 남원부는 최상품 종이인 표전지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종이 조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남원과 전주 등 고을에서 질 좋은 종이를 공납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표면적으로 남원과 전주 등 전라도 일대가 대표적인 종이 생산지로 기록에 남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종이 공납과 연관된 紙役은 조선 초기부터 승역의 일종이었다. 토지 소유 사찰은 공납과 잡역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종이 납부가 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이 종이 제작 이외에도 농산물 채집, 유생 접대 등 잡다한 잡역이 즐비하였다. 그리고 양란 이후에도 사찰의 종이 공납이 승역의 주요 항목이 되었다. 조지서의 미비는 종이 생산을 오롯이 지방 군현에 전가시켰고, 대동법 실시는 현물 납부의 불필요성으로 지방 지소의 기능을 퇴락시켰다.

그런데도 종이의 소비량은 대내·외적으로 증대하면서 지방의 종이 납부는 지속되었고, 사찰이 1차 종이 생산처로서 중앙 정부부터 지방 군현에 이르는 각급 기관에 상납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었다. 이것은 두 차례의 전란과 자연 재해, 기근, 田地와 인구 감소, 이에 따른 백성 부담 경감 차원의 대동법과 균역법 실시 결과로, 이를 통해 사원 경제는 피폐하면서 '寺門凋弊'·'僧徒疲殘'이 된 것이다.

18세기 남원현의 종이 공납도 대부분은 승역을 통해 해결되었다. 당시 남원현의 紙役에는 천언사, 보현사, 귀정사, 난계사, 풍곡사의 5개 사찰이 언급되었다. 이들은 단오 때의 대유둔 봉진, 내수사의 별장지, 호조의 『동의보감』, 『주자대전』, 『송명신언행록』, 『대학연의보』 인출 등에 책임지고 응해야 했다. 하지만 종이를 상납하고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원가 이하의 값을 지급받는 등 실정을 고려치 않은 부당 처우를 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언사 등도 종이 공납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남원현공사』, 『남원현첩보이문성책』, 『동국여지지』, 『묵재일기』,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성지』, 『의흥현공사』, 『임원경제지』, 『조선왕조실록』, 『홍재일기』

강혜영 (2005).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조선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2, 5-34.

김삼기 (2003). 조선후기 관영지소의 변화. 중앙사론, 17, 3-33.

김선경 (2024). 조선 초 승역(僧役) 관련 상직(賞職) 연구. 조선사연구, 33, 119-179.

김선기 (2023).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김순규 (2000). 조선 후기 사찰 紙役의 변화. 청람사학, 3, 271-302.

김인규 (2003). 조선 명종대 성주지역 사찰의 제지활동. 전통문화논총, 1, 87-106.

노요한 (2021). 조선초 서적간행의 토대 구축과 종이의 공급. 한문학논집, 60, 7-42. https://doi.org/10.17260/jklc.2021.60..7

박준호 (2017).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동양학, 66, 113-132. https://doi.org/10.17320/orient.2017..66.113

손계영 (2017).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조극선의 일기를 중심으로. 장서각, 38, 56-89. https://doi.org/10.25024/jsg.2017.38.56

오경후 (2015). 광해군・인조 년간 僧役의 실제. 한국불교사연구, 6, 43-71.

이동희 (2014). 전주한지의 역사성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전북사학, 45, 299-322.

이민정 (2024). 영조대 五家統法 시행과 국가의 지방통치 성격. 사회와 역사, 142, 135-166. https://doi.org/10.37743/SAH.142.5

이상백 (2022). 조선 후기 남해 화방사의 製紙와 서적 刊印 연구. 서지학연구, 89, 109-131. https://doi.org/10.17258/jib.2022..89.109

이성임 (1998). 조선중기 유희춘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83-112.

이성임 (2015). 16세기 지방군현의 입역체제와 승려의 부역(賦役) - 경상도 성주의 안봉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 176-209.

이승민 (2024). 조선시대 종이의 생산과 외교적 활용. 한일관계사연구, 83, 121-155. https://doi.org/10.18496/kjhr.2024.2.83.121

이종수 (2022). 조선 후기 고성 옥천사의 중창과 僧役 문서. 남명학연구, 76, 259-290.

전영준 (2004). 여말선초 국가 토목공사와 공역승. 동국사학, 40, 187-217.

전영준 (2011).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47-78. https://doi.org/10.23013/localh.2011.14.1.002

전철 (2000). 한지의 이해와 전북의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전북의 예술사. 서울: 서경문화사.

최주희 (2012). 15~16세기 別進上의 상납과 운영- 강원·경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6, 7-47.

하혜정 (2003). 종이 單位考. 동양고전연구, 18, 195-230.

홍선이 (2014). 歲幣·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인조대 歲幣·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5, 257-295.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ibyeonsaDeungrok』, 『Donggukyeojiji』, 『HongjaeIlgi』, 『Imwonkyungjeji』, 『Kyungguk-daejeon』. 『Mukjaeilgi』, 『Namwonhyeoncheopboimunseongchaek』, 『Namwonhyeongongsa』, 『Sinjeungdonggugyeojiseunglam』,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Yongsungji』.

Choi, Joo-hee (2012). The offering and management of Byeoljinsang(別進上) in the 15th~16th centuries: Focus on the cases of Gangwon and Gyeongsang Provinc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46*, 7-47.

Ha, Hye-jeong (2003). Consideration of paper units.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18*, 195-230.

Hong, Sunny (2014). Characteristics of Joseon-Qing Relations as Viewed from the 'Annual Tributary Payments'(歲幣) and 'Tributary Gifts'(方物) to Qing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omposition of 'Annual Tributary Payments'(歲幣) and 'Tributary Gifts'(方物) to Qing and the financial burdens thereof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仁祖).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55*, 257-295.

Jeon, Cheol (2000). Understanding Hanji and Jeonbuk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Association (Ed.). Art History of Jeonbuk. Seoul: Seogyeong Publishing.

Jeon, Young-joon (2004). A Study Gong-Yeok Monk(供役僧) in the Period of Late Koryo and Early Chosun Dynasty. The Dongguk Historical Society, 40, 187-217.

Jeon, Young-joon (2011). A Study on the Changes of Area of Paper Mulberry and Paper, and Temple Paper-Manufacture seen in Gwanchan Jiriji (Geography of Eight Provinces Edited by Governmen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14(1)*, 47-78. https://doi.org/10.23013/localh.2011.14.1.002

Kang, Hye-Young (2005). A Study on Printing of Namwon Region: In the Ch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2*, 5-34.

Kim, In-kyu (2003). On Paper Making in the Buddhist Temples of Sungju(星州) Area at Joseon.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Heritage, 1*, 87-106.

Kim, Sam-ki (2003).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Paper Manufactory in late Chosun period. *JOONGANG SARON, 17*, 3-33.

Kim, Seon-gi (2023).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the Buddhist Monk Labor in the Late Joseon.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Kim, Seon-gyeong (2024). A Study on the monk officials(賞職) related to the Labor of monks(僧役) in the early Joseon Period. *CHOSONSA YONGU, 33*, 119-179.

Kim, Soon-kyu (2000). Changes of temple paper-making labor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UN GRAMSAHAK, 3*, 271-302.

Lee, Dong-Hee (2014). A Fundamental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Jeonju Hanji. *JEON BUK SAHAK, 45*, 299-322.

Lee, Jong-Su (2022). Reconstcution of Okcheonsa Temple of Gose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Official Documents Imposing Labor Services to Buddhist Monks. *The Nammyonghak Study, 76*, 259-290.

Lee, Min-jung (2024). Discussion on Ogatong-beob and Local Governanc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Society and History, 142*, 135-166. https://doi.org/10.37743/SAH.142.5

Lee, Sang-baek (2022). A Study on Paper Production and Book Publication of Hwabangsa Temple in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9, 109-131*. https://doi.org/10.17258/jib.2022..89.109

Lee, Seung-min (2024). The Production and Diplomatic Application of Paper in the Joseon Dynasty.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83*, 121-155. https://doi.org/10.18496/kjhr.2024.2.83.121

Lee, Sung-im (1998). The Purchasing of Goods by Yu Hui-chun's Household in the Mid-Joseon Period and Its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9,* 83-112.

Lee, Sung-Im (2015). Service System of a Local County in the 16th Century and Statute Labor of Monks: Focusing on Anbongsa Temple, Seongju, Gyeongsang-do. *Journal for the Study of Korean Buddhist History, 8*, 176-209.

Noh, Jo-hann (2021).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foundation for book publication, and the suppl y of paper in the early Chosŏn period.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60*, 7-42.

Oh, Kyeong-Hwo (2015). The State of Monks' Labor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and King Injo in Chosun Dynasty. *Journal for the Study of Korean Buddhist History, 6*, 43-71.

Park, Jun-ho (2017). Raw Materials of Paper and the Production of Mixed Papers in the Early Joseo n Dynasty. *The Oriental Studies, 66*, 113-132. https://doi.org/10.17320/orient.2017.66.113

Son, Ke-young (2017). Paper Usage and Supply of a Literati Household in Seventeenth-Century Joseon: Focusing on the Diaries of Jo Geuk-seon. *JANGSEOGAK, 38*, 56-89. https://doi.org/10.25024/jsg.2017.38.56